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미활용 군부지 활용 등 특례〉

■ 이상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343호)

2025.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상식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5. 7. 8.
3. 회부연월일 : 2025. 7.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하는 자에게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고, 국가가 지방하천의 보수와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국방개혁과 병력감축 등으로 접경지역 안에 군부대부지로 활용되지 아니하는 미활용 군용지가 발생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임.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유사하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접경지역 안의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미활용 군부지를 매입하거나 미활용 군용지의 지상물 등을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이를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접경지역 안의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미활용 군부지를 매입하거나 미활용 군용지의 지상물 등을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이를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활용 군용지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7조의2(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① 국방부장관은 시·도시사가 요청하는 경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인하여 군부대부지(「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군부대부지를 말한다)로 활용되지 아니하는 접경지역 안의 토지(이하 “미활용 군용지”라 한다)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27조의3(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등) ① 국방부장관은 미활용 군용지를 징발 해제, 양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1. 국방부장관이 지상물에 대하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인 경우. 다만, 처분을 할 예정인 지상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u> <u>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계속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활용을 희망하는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u> <u>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고 국방부장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u> <u>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u>

현행	개정안
<신설>	자체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의 제거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활용 군용지에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제27조의4(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이 조에서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려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미활용 군용지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현행	개정안
	<u>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징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징발 해제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을 요청할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u> ③ <u>미활용 군용지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은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제2항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으로 본다.</u> ④ <u>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미활용 군용지를 매입하거나 미활용 군용지의 지상물 등을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미활용 군용지 또는 지상물 등을 군부대가 현재 사용 중이며 앞으로 계속 사용할 계획이 있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의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u> ⑤ <u>시장·군수는 미활용 군용지</u>

현행	개정안
	<u>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 대장에 기재할 수 있다.</u>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접경지역’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①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10개 시·군과 ②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7개 시·군 등 총 17개 시·군으로,¹⁾

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간인통제선”이라 한다) 이남(以南)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접경지역의 범위) 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의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군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2.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 ② 법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군을 말한다.
 1.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속초시
- ③ 법 제2조제1호 단서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비무장지대 중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에 위치한 집단취락지역으로 한다.

북한과 인접하여 대규모 군부대가 주둔하고 각종 군사시설 보호
규제 등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경제적으로 낙후된 측면이 있음.

이 중 강원특별자치도에 속하는 7개 시·군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미활용 군용
지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아 도지사 및 관할 시장·군수
는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직접 토양
오염을 정화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추진시 국방부장
관은 징발해제 및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을 우선 검토하고, 미활용 군
용지 또는 지상물 등과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음.²⁾

2)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1조(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① 국방부장관은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국방개혁에 관
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인하여
군부대부지(「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군부대부지를 말한다)로
활용되지 아니하는 강원자치도 안의 토지(이하 “미활용 군용지”라 한다)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
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는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제72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등) ① 국방부장관은 미활용 군용지를 징발 해제, 양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방부장관이 지상물에 대하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인 경우. 다만, 처분을 할 예정인 지
상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2.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을 계속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
만, 활용을 희망하는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3.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고 국방부
장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
4.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의 제거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
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활용 군용지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개량한 자
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제73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이 조에서 “공익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려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
다.

반면 현행법은 접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발전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접경지역특화발전지구의 지정과 사업비 지원, 부담금 등 감면 등 규정을 두고 있으나,³⁾

② 국방부장관은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미활용 군용지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정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발 해제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을 요청할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③ 미활용 군용지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은 「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제2항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으로 본다.

④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미활용 군부지를 매입하거나 미활용 군용지의 지상물 등을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미활용 군용지 또는 지상물 등을 군부대가 현재 사용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계획이 있는 강원자치도 또는 관할 시·군의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⑤ 관할 시장·군수는 미활용 군용지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다.

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7조(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 등과 협의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사업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이를 제외하고 고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접경특화발전지구는 고시된 날부터 5년,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이 승인된 날부터 3년 안에 해당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 승인의 효력을 상실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접경특화발전지구가 접경지역 이용 및 보존사업의 시행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과 고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사업비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에서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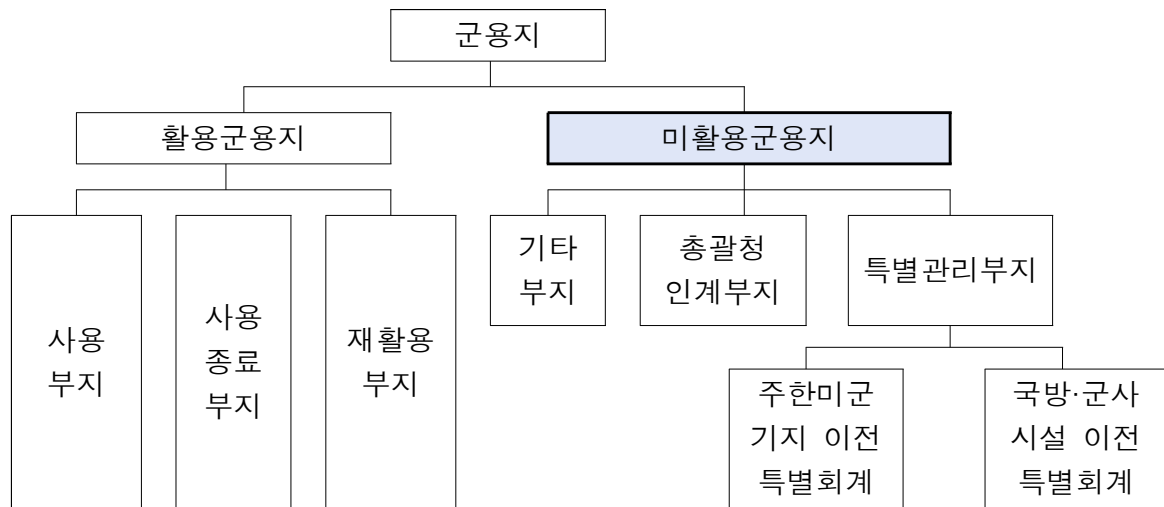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⁴⁾되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미활용 군부지의 활용 등에 관한 내용은 없어 접경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⁵⁾

< 군용지 분류체계도 >



※ 자료 :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별표 2] 군용지 분류체계도

2.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4.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5.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제20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증축하는 자 또는 접경지역으로 회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접경지역의 투자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접경지역에서 발전종합계획 또는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제12조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지원조치에 관한 권한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조치를 할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접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김규남 등, 「국방개혁2.0 추진에 따른 미활용 군용지의 합리적 민수전환 방안」, 연구보고 21-14, 강원연구원.

이에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과 유사하게 접경지역에서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
등에 관한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접경지역에서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을 촉진하여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상하
반기 별로 1회씩 미활용 군용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접경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 활용 시범사업’으로 철원
군 ‘김화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과 인제군 ‘북유럽형 사우나시설 조
성’ 사업을 선정하여 생활체육시설 및 특화 관광자원 조성을 추진하
고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도입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50